

의안번호	2221418
의 퇴 인	이광재의원
회 답 일	2026. 10. 13.
추 계 번호	26C488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대상인 체육시설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제1항제3호)	의무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수지차보전기관인 공단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단이 입장료 수입 등으로 운영비 등을 충당하지 못하고, 국비 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는 직접 또는 강원개발공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과 비교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총지출 측면에서 증가폭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체육시설】

소재	구분	소유자(관리주체)	비고
강릉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개발공사)	전문체육시설
평창 (설상)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개발공사)	전문체육시설
강릉 (빙상)	아이스 아레나	강릉시(강릉시)	시민체육시설
	강릉 컬링센터	강릉시(강릉시)	시민체육시설
	관동 하키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가톨릭관동대)	학교체육시설
	쇼트트랙 보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영동대)	학교체육시설
정선 (설상)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곤돌라운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다만, 현시점에서 공단이 개정안에 따라 운영하게 되는 체육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¹⁾, 체육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과 운영비 등을 추정할 수 없어 국비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던 곳이 개정안에 따라 공단으로 관리주체가 바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려움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